

【 3 】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조사 결과보고서

양 주 군 의 회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

1. 조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최근 각종 언론매체 (TV·신문) 등에 보도되고 있는 양주군 남면 병원폐기물과, 회천읍 덕계리 덕산국교 뒷편에 야적된 병원 폐기물로 인하여 주민보건에 위해가 심히 우려되고, 그 조치실태가 극히 미흡하여 철저히 조사 시정 조치코자 함.

2. 조사기간

1995년 9월 16일 ~ 10월 9일 (24일간)

3. 조사실시 대상기관

: 양주군

- 관련공무원 및 민간인

소속	직위 및 직급	성명	비고
보건소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보건소	지방보건주사보	한순자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회천읍	읍장	윤광노	

나. 민간인 (증인)

성명	주소
왕희재	서울 강동구 수유동 408- 1
이원형	양주군 주내면 산북리 295 - 13
이복노	양주군 회천읍 덕계6리 429 - 2
남진우	양주군 남면 입암리 산1번지 (대풍석재)
윤장혁	양주군 남면 입암리 343 번지

4. 조사반 편성

- 조사특위위원장 이 흥 규
 - 간 사 홍 재 룡
 - 조 사 위 원 이 상 원 위원 유 재 원 위원 박 영 원 위원
김 광 배 위원 김 영 안 위원

◦ 사무보조자	전문위원	홍 영 섭
	지방행정주사보	김 태 성
	속 기사	2 명

5. 조사요령

- 가. 언론보도 사항 확인
- 나. 현지조사
- 다. 사건경위에 대한 보고청취및 질의답변
- 라. 관련 서류조사
- 마. 관계공무원및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
- 바. 기타

6. 조사일정 및 장소

(第41回 - 附錄) 7

일 시	조 사 주 진 사 항	장 소
95. 9. 16 (토) 11 : 20	◦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견	본회의장
95. 9. 16 (일) ~ 9. 18 (월)		현지조사
95. 9. 19 (화) 18 : 00	1.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의 건 ◦ 질의 3. 증인채택 결정의 건	본회의장
95. 9. 24 (일)	공 휴 일	
95. 9. 25 (월) 18 : 00	1. 채택 증언에 대한 증언 청취 2.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본회의장
95. 9. 29 (금) 10. 8 (일)	1.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에 대한 현지조사	현지조사
95. 10. 9 (월)	1.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에 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회의장

7. 조사진행순서

- 가. 병원폐기물 처리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 나. 현지조사 문제점 사전 파악
- 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 라. 질의
- 마. 증인채택
- 바. 증인선서 (해당 실과소장, 채택증인)
- 사. 증언청취
- 아. 조사 종료 선언

8. 주요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

가. 개요

본 사건은 행위자 이원형이 경기도로부터 '89. 1. 4 적출물 처리규정에 의한 처리업 허가를 득한후 '95. 9. 15 조사당일 현재까지 회천읍 덕계리에서 불법으로 병원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소각하여 왔으며, '95. 8. 29일에는 남면 입암리 야산에 동 폐기물을 불법매립 한 사실이 현지 주민과 양주신문에 의해 확인 되었으나, 관리 기관인 양주군에서는 이에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 하였음은 물론, 위법사항이 발견 허가취소된 자에게 재 허가를 하였으며, 재 허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는등 여러가지 정황을 분석해 볼때 쌍방간의 유착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군민보건 정서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TV·신문등 언론에 10여회에 걸쳐 보도되므로서 양주군민의 자존심을 실추케 되었음.

나. 조사대상자별 내용

1) 이 원 형

가)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관련서류, 현지조사 증언청취등으로 보아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사(계사)를 불법으로 이용 적출물 보관시설로 무단용도 변경 사용 하였으며,

나) 무허가 배출시설물 설치운영

'89. 1. 4 경기도지사로부터 적출물을 단순 수집운반 위탁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소각장을 설치 (폐기물관리법과 적출물처리규정 위반) 운영 하였으며, 또한 남면 매곡리에 허가없이 소각로를 설치한 바 있음.

다) 적출물처리규정 위반

- 적출물처리규정에 의거 적합한 위생시설이 되어있는 창고와 시설에 보관하고, 위생설비가 된 냉동, 냉장차량으로 수송하여야 함은 물론,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위한 처리업소에서 소각케 하여야 하나 계사와 노지에 야적보관 하였으며, 민가근처에 불법으로 설치된 소각장에서 소각 하였고,
- 냉장차량이 아닌 화물차를 이용 남면 입암리 야산에 매립하므로서 토양오염과 군민보건에 피해가 예상됨.

라) 허위공문서 작성등

- '94. 1. 28 양주군수로부터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신청 수리받은 서류를 보면 남면 매곡리 325-4번지에 시설을 갖추고 허가는 남면 상수리 203-1번지로 작성 제출한 바 있음.

2) 왕회재

가) 관리인 이원형이 본인소유의 건물(계사)을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고 적출물 창고로 무단용도변경 사용한 바 있으며,

나) 관리인 이원형이 본인 승인없이 소각로를 설치운영 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위자 이원형은 왕회재 본인의 인척관계에 있는 고용된 관리인으로서 승락없이 설치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본인소유 토지내에 적출물 100여톤을 3년이상 야적방치케하여 주민건강에 피해가 예상된다 판단됨.

3) 남진우

- 남진우는 남면 입암리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말소자로서 본인이 임대운영하는 석산에 이원형으로 하여금 매립케한 혐의자로서 본 특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구 되었음을 인지하고, 출석치 않아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을 위반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합한 조치 또는 사유규명이 요망됨.

4) 한 순 자

- 가) 한순자는 당시 양주군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적출물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적출물 처리규정에 의해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야 하나,
- 나) 행위자 이원형이 위생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창고에서 냉장고 없이 폐기물이 방치되고, 노지에 야적된 것을 적법하게 조치하지 못하였으며,
- 다) 냉동 또는 냉장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일반 화물차량으로 운반하고 불법 무허가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이에대한 지도감독이 소홀 하였음.

5) 유 청 길

- 가) 유청길은 '92. 1. 13부터 현재까지 보건소 예방의약계장으로서 적출률 처리업무를 담당하는자로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나
- 나) 행위자 이원형이 위생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창고에서 냉장고 없이 폐기물이 방치되고, 노지에 야적된 것을 적법하게 조치하지 못하였으며,
- 다) 냉동 또는 냉장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일반 화물차량으로 운반하고 불법 무허가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이에대한 지도감독이 소홀 하였음.

라) '93. 7. 2 당시 덕계리 현장에 방치하였던 병원폐기물을 전량 반출 처리하였다고 하나, 본특위 증인 이복노의 진술에 의하면 잔여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허위 복명임이 밝혀졌으며,

마) '94. 1. 28 이원형에게 재허가를 함에 있어 실제 사업장은 남면 매곡리 325-4 번지이나 남면 상수리 203-1번지에 허가를 내주었으며 시설및 장비조사서와,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상수리 203-1번지로) 작성하여 보고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허가서를 이원형에게 작성 교부 하였고,

바) 양주신문과 남면지역 주민에 의해 발굴된 남면 입암리 불법매립사항을 '95. 8. 31 의정부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 하였으나, 그후 발견 확인된 덕계리에 방치된 100여톤의 악적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치 않아 범법사항을 축소 은폐시킨 의혹을 떨칠 수 없으며, 사후조치를 할에 있어 미온적으로 대처 하였으므로 이는 명확한 직무유기라고 판단됨.

6) 조 종 선

가) 조종선은 양주군보건소장으로서 군민보건 향상에 남다른 노력을 하여야 하나 소속 예방의약 계장과 담당직원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적출물이 불법으로 처리되게 하여 물의를 야기 시켰으며,

'95. 8. 29 발굴에서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과정을 볼때 9. 5 작성된 불법매립 적출물발굴처리 실시계획을 9. 1 수립한 것인양 허위보고 하였으며,

상급자인 부군수와 군수에게 사실을 즉각 보고치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으므로 직무를 유기 하였다고 판단되며

나) '95. 8. 31 이원형을 의정부경찰서장에게 고발후 추가로 불법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고발치 않아 사건을 축소 은폐 하려는 의혹을 떨칠수 없음.

7) 최 명 섭

- 최명섭은 양주군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무허가 소각장에 대한 관계법 규정에 의한 조치가 미흡함(회천 덕계리, 남면 매곡리 소각장)

9. 조사특별위원회 종합 의견

가. '95. 8. 29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이 발견되었음에도 95. 9. 5 구성된 처리대책 추진반에서는 아무런 처리대책 없이 입암리 매립 현장에서 덕계리 공터로 옮기고, 이에 주민이 반발하자 다시 백석면 오산리 소재 양주군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겼으며,

나. 이또한 문제가 발생되자 수로원과 보건소 직원등을 동원하여 위생적인 대책없이 분리작업을 하게 하는등, 근원적인 조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사건의 정황을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수습하는 대처능력이 극히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다. 특위운영기간중 집행부가 문제가 되었던 병원폐기물을 행위자 부담으로 처리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였으나, 향후 이와 관련한 마무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관련 민간인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 이원형에 대한 추가협의사항 고발
- 기타 관련자의 불법사항 재검토

2)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

3) 남면 입암리 매립지와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장에 대한 사후조치

- 오염 우려 토양에 대한 검사및 결과에 따른 방역 대책 강구